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11.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2. 1.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임미연 의원 외 5명(황국주, 도하석, 장호섭, 이진환, 김기열)
- 발의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검토기간: 2025. 11. 17.(월) ~ 11. 21.(금)

2.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기부자에 대한 포상과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안 제6조)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사업(안 제22조)
-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안 제23조)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안 제2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1. 14. ~ 11. 26.)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기부금 모금 현황은 2023년도 6천 6백만원, 2024년도 8천 5백만원, 2025년 9월말 현재 1천 6백만원 등 총 1억 6천 7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
 - 안 제22조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교육 및 각종 행사,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구 행사 초청, 구 홍보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표, 감사 서한문 등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사업 추진, 기부자에 대한 예우,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기부금 모금 확대와 제도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보완하고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우리 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 9월말 현재	비 고
건 수	1,956	954	835	167	
기부액	166,751	65,651	84,561	16,539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관 계 법 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2. 지역특산품 및 특화콘텐츠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5.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이 조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실적 및 매출액
5. 답레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대구광역시·구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구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물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구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구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레품 및 답레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레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답레품은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답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레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구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농수산물가공품 등 제조품

10.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개정 2024. 12. 11.)
13. 구의 전통성·상징성·정체성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품목
1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전에 미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을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 구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일부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2.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